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198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 송언석 · 구자근 · 박수영

이종욱 • 박성훈 • 이인선

정희용 • 김상훈 • 최은석

박대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인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보조사업자 중 1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의 경우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국고보조금 규모가 102조원을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국가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함으로써 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7조의2).

법률 제 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억원"으로,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을 "간접보조사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할때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의2제1항 본문 중 "10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및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부 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
사업의 실적 보고) ① (생 략)	사업의 실적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	②
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	
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	
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u>간접보조금</u>	<u>간접보조금</u>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u>의 총액이 1억원</u>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u>간접</u>	<u>간접</u>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u>보조사업자는</u>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	
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	
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	
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u><신 설></u>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u>③</u>·<u>④</u> (생 략)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이하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라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보
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산보고서
의 검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
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
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의 적정
성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
계감사) ①
<u>3억원</u>

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 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있다.

② ~ ④ (생 략)

<u>.</u>
② ~ ④ (현행과 같음)